

서울 행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39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1층 (통인동)
대표자 정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피 고 1. 건국대학교 총장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화양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열

2. 연세대학교 총장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신촌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변 론 종 결 2017. 2. 28.
판 결 선 고 2017. 3. 17.

주 문

록'표의 '연세대'란 중 각 순번에 따라 '연세대 제1정보'와 같이 칭한다}의 공개를 청구 하였다.

나. 피고1은 2015. 12. 7. 원고에게 건국대 제1 내지 4정보에 관하여 위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2는 2015. 11. 13. 원고에게 연세대 제1 내지 9정보에 관하여 별지2 '연세대 학교 총장의 답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피고2가 미소지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1에 대한 청구(이 사건 제1처분) 부분

가. 건국대 제1정보(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부분

(1) 피고1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1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학교'라 한다)와 산은자산운용 주식 회사(2016. 9. 28.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으로 사원 변경)는 건국대학교 1차 기숙사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국대학교기숙사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원으로 참여하였고, 건국대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건국대학교 2차 기숙사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에듀 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원으로 참여하였는데, 건국대학교는 '건국대학

교기숙사유한회사'와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건국대학교기숙사유한회사'와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를 합하여 이하 '각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각 기숙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건국대 1차 및 2차 기숙사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실시한 주체는 위 각 유한회사여서, 위 각 유한회사가 건국대 제1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피고1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건국대학교 기숙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에듀21건국대학교기숙사 건립 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건국대학교는 위 각 유한회사와의 실시협약에서 '공사비를 실시협약서에 기재된 특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건국대학교가 위 각 유한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1은 위 각 유한회사와의 공사비 합의를 위하여 위 각 유한회사로부터 공사비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피고1은 건국대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뿐 위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1은 건국대 제1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1정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1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1정보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1는 건국대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건국대학교가 각 유한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따라 각 유한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등 참조).

실시협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를 구성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와 독립된 비공개 사유로서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1이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정보 중 어느 부분이 위 규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어떠한 이

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떠한 이유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건국대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1정보 부분은 위법하다.

나. 건국대 제2정보(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 [건국대 제4정보(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는 건국대 제2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로 보이므로, 이 항에서 건국대 제2정보와 함께 판단한다]

(1) 건국대 제2, 4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

피고1는 건국대 제2, 4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위 각 유한회사가 기숙사 설립 이후 외부회계감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피고1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밝히고 있고, 상법 제579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서류(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위 서류들에 현금흐름표 및 주식을 더한 것을 의미함)와 그 부속명세서를 재무제표로 규정하여 재무제표의 범위에 대차대조표 등의 부속명세서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건국대 제2, 4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은 위 각 유한회사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2, 4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은 위법하다.

(2) 건국대 제2, 4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

(가) 피고1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1은, 건국대 제2, 4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은 위 각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뿐 피고1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1은 위 각 유한회사의 사원으로서 위 각 유한회사의 계정별 원장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피고1은 건국대 제2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뿐 위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건국대 제2, 4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2, 4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1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2, 4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계정별 원장에는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법인세, 장기금융상품,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시설장치,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등의 각 계정과목에 관하여 날짜별로 적요란, 코드란, 거래처란, 차변란, 대변란, 잔액란에 각각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개의 거래가 알려지게 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2, 4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은 적법하다.

다. 건국대 제3정보(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

(1)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부분

피고1은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건국대학교가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비밀유지의무조항에 따라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시협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와 독립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1이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정보 중 어느 항목 부분이 위 규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어떠한 이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떠한 이유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에듀21건국대학교기숙사 건립 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만으로는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부분은 위법하다.

(2)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

(가) 피고1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1은,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을 피고1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듀21건국대학교기숙사 건립 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건국대학교는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의 실시협약에서, 건국대학교는 기숙사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국대학교가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에게 기숙사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면서(Build-Transfer-Operate 방식),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가 건국대학교에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기숙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초안을(실시협약 제17조 제1항), 다음 해 1월 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기숙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확정계획을(실시협약

제17조 제2항) 각 통지하고, 건국대학교와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가 당해연도 기숙사비를 당해연도 1월말까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실시협약 제21조 제2항) 약정하였으므로, 위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1은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로부터 기숙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기숙사비 합의를 위한 기숙사비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1이 직영 기숙사에 관하여 '생활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민자 기숙사에도 그와 유사한 운영지침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피고1은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뿐 위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1은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1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1은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건국대학교가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비밀유지의무조항에 따라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도 주

장한다.

살피건대, 실시협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와 독립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1이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정보 중 어느 부분이 위 규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어떠한 이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떠한 이유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6호 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3정보 중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 관련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1, 3정보 부분, 건국대 제2, 4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2에 대한 청구(이 사건 제2처분) 부분

가. 연세대 제1정보(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연세대 제7정보(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부분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2가 2015. 11. 13. 원고에게 별

지2 '연세대학교 총장의 답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연세대 제1, 7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실행예산'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경비, 지점관리비로 구성되는데 피고2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피고2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연세대 제1, 7정보와 관련하여 '실행예산'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 실행예산이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경비, 지점관리비로 구성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피고2는 연세대 제1정보와 관련하여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이라고 공개 내용을 기재하면서 공개 결정을 하고 연세대 제7정보와 관련하여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이라고 공개 내용을 기재하면서 공개 결정을 한 점, 원고는 2016. 2. 11.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연세대 제1, 7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016. 10. 10.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실행예산이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경비, 지점관리비로 구성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원고의 위 주장은 2016. 10. 10.경 이루어져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세대 제1, 7정보와 관련하여 피고2의 비공개결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주장의 비공개 부분을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1, 7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연세대 제2정보(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연세대 제8정보(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

(1) 연세대 제2, 8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

(가) 피고2는, 피고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를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였고 위 정보에는 회계자료 중 수입내역과 비용내역, 기숙사의 운영현황 및 결과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면 별도의 정보공개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등 참조), 교육기관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법은 공개대상정보, 공개방식, 공개절차 등을 달리하므로, 교육기관정보 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을 나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극히 일부 회계항목에 관한 개괄적 수치뿐임을 알 수 있어,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연세대 제2, 8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에 관한 공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고2는 연세대 제2, 8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는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정보에 불과할 뿐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가 법인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이 지점에 3년간 비치되고 법인의 이해관계인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인 점(상법 제448조), 이 사건 공동피고로 지정된 피고1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국대 제2, 4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에 관한 공개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세대 제2, 8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2, 8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연세대 제2, 8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

피고2는 연세대 제2, 8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은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세부정보일 뿐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정별 원장에는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법인세, 장기금융상품,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시설장치,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등의 각 계정과목에 관하여 날짜별로 적요란, 코드란, 거래처란, 차변란, 대변란, 잔액란에 각각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개의 거래가 알려지게 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2, 8정보 중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은 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는 이상 적법하다.

다. 연세대 제3정보(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

(1)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부분

(가) 피고2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2는, 연세대학교가 동원건설과 직접 계약을 한 바 없으므로 연세대 제3정보 중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를 피고2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국제학사 건설 및 운영 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세대학교가 대우건설컨소시엄(정식명칭은 '연세국제학사관리 주식회사'로 보인다)과 SK국제학사와 관련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 동원건설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회사의 하나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2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연세대 제3정보 중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였으나 이는 대우건설컨소시엄과의 위 실시협약서가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회사의 하나인 동원건설과의 계약서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SK국제학사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의 계약상대방이 동원건설인지 대우건설컨소시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라고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그 실제 의사는 'SK국제학사와 관련한 연세대학교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의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2 또한 원고의 공개청구정보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와 같이 답변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는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대상정보인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실제로는 SK국제학사와 관련한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연세대학교 사이의 실시협약서, 이하 같다)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2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2은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2는 위 정보가 입찰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되면 향후 공정한 입찰진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하나 위 정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위 정보의 공개가 공정한 입찰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2는 위 정보가 공개되면 지적재산권에 가까운 노하우가 모두 공개되어 피고2의 계약상대방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다른 회사들이 손쉽게 경쟁회사의 민자사업 경영 노하우 및 원가결정방법과 민자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입수하게 된다고 하나 위 정보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이 법원의 '연세대 학교 국제학사 건설 및 운영 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를 더하여 보면,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부분은 위법하다.

(2)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

(가) 피고2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2는,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을

피고2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국제학사 건설 및 운영 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연세대학교는 대우건설컨소시엄(정식명칭은 '연세국제학사관리 주식회사'로 보인다)과의 실시협약에서, 연세대학교는 기숙사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연세대학교가 대우건설컨소시엄에 기숙사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위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기숙사시설을 연세대학교에게 임대하여 연세대학교가 기숙사시설을 사용수익하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명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약정을 하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기숙사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세대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로(실시협약서 제40조) 약정하였으므로, 위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2는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기숙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피고2는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뿐 위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송도학사 운영 규정(갑 제10호증) 제6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가 송도학사 운영 규정과 시행 세칙을 제·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는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2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 문서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2은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 문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숙사시설의 운영지침은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한 자료에 불과할 뿐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2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정보 중 어느 항목 부분이 위 규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어떠한 이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5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제7호)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 문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3정보 중 SK국제학사의 운영지침과 그 첨부 문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연세대 제4정보(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연세대 제5정보(제중학과 법현학을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부분

(1) 피고2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2는, 피고2가 연세대 제4, 5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국제학사 건설 및 운영 사업 실시협약서', '연세대학교 제중학사·법현학사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연세대학교는 SK국제학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컨소시엄(연세국제학사관리 주식회사)을,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와 관련하여 연세에코에듀 주식회사를 각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위 각 사업의 발주기관으로서 위 지정 과정에서 위 각 사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참조), 위 각 사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대우건설컨소시엄의 구성회사인 동원건설, 연세에코에듀 주식회사의 건설출자자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이 제출한 입찰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피고2는 연세대 제4, 5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뿐 위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는 연세대 제4, 5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4, 5정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2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4, 5정보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연세대 제4, 5정보는 SK국제학사와 관련하여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우건설컨소시엄(연세국제학사관리 주식회사), 그 구성회사인 동원건설,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와 관련하여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연세에코에

듀 주식회사, 그 건설출자자인 한화건설 등이 작성한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연세대학교는 향후에도 입찰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숙사를 건축할 가능성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정보는 공개될 경우 향후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4, 5정보 부분은 적법하다.

마. 연세대 제6정보(연세대 제중학사와 법현학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 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부분

살피건대, 피고2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그 운영에 관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연세대 제6정보를 피고2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6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바. 연세대 제9정보(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부분

(1) 피고2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2는, 연세대 제9정보를 피고2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제2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연세대학교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와의 실시협약에서, 연세대학교가 기숙사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연세대학교가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에게 기숙사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위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기숙사시설을 연세대학교에게 임대하여 연세대학교가 기숙사시설을 사용수익하면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명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약정을 하였는데, 연세대학교는 기숙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입주수입을 연세대학교에 귀속시키고(실시협약서 제2조 제3항) 임차한 기숙사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기로 한 점(실시협약서 제17조 제1항), 송도학사 운영 규정(갑 제10호증) 제6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가 송도학사 운영 규정과 시행 세칙을 제·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피고2는 연세대 제9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뿐 위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는 연세대 제9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9정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2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9정보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2은 연세대 제9정보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숙사시설의 운영계획서는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계획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할 뿐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2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정보 중 어느 항목 부분이 위 규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어떠한 이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5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제7호)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세대 제9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9정보 부분은 위법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소 중 연세대 제1, 6, 7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3, 9정보 부분, 연세대 제2, 8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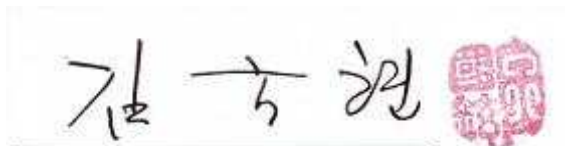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소 중 연세대 제1, 6, 7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처분 중 건국대 제1, 3정보 부분, 건국대 제2, 4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 이 사건 제2처분 중 연세대 제3, 9정보 부분, 연세대 제2, 8정보 중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김춘화 

판사 이광열 이광열 

열람용

별지1

정보 목록

대 학 교	청 구 내 용
연세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k국제학사의 기숙사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 3.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외주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중학과 법현학과를 건설 중인 한와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중학과 법현학과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방안 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과 법현학과의 운영계획과 그 첨부문서 7.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8.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9.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건국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에듀21건국대 기숙사 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에듀21건국대학 기숙사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

별지2

연세대학교 총장의 답변 내역

청구사항	결정내용	공개 내용 및 비공개 내용 사유
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 예산	공개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
SK국제학사의 설립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공개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계정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 및 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 및 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 및 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제중학과와 법현학과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 및 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제중학과와 법현학과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 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과와 법현학과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비공개	미소지자료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공개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부분공개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계정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 및 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 및 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별지3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끝.